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4월 7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도현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(안 제22조의2)
-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변경 (안 제23조제2항)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4월 13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31
 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##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영 제6조제1항”을 “「주차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비용납부자에 대한 설치의무 면제)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준공 시 그 비용에 상응하는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제공하며,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공영주차장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, 개별공시지가가 결정·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

항제3호의 예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부설주차장의 설치 등) ①  <u>영 제6조제1항</u> 및 제2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                      설물의 종류와 기준은 별표 2와                      같으며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                      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, 기                      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                      는 「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                      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                      정」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                      로 하고 별표 4의 설치기준을                      적용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1조(부설주차장의 설치 등) ①  <u>「주차장법 시행령」</u> (이하                      “영” 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의2(비용납부자에 대한 설                      치의무 면제) ① 시장은 법 제19  <u>조제5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일                      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부설주                      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                      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 의무를                     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 <u>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는                     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                   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준공 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토지가액의 산출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.</p>	<p><u>그 비용에 상응하는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제공하며,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공영주차장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23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</p>

현행	개정안
<p>4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<u>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, 개별공시지가가 결정·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예에 따른다.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